이것이 알고싶다

제목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에 대한 질의

질의 : 안전관리자

금번에 당사에서 Irradiator(동물사체 및 세포조사기)를 제작하여 사용기관에 납품하고자합니다. 사용 동위원소는 Cs-137, 100Ci이므로 B(U)형입니다. Irradiator(동물사체 및 세포조사기)는 방사선기기이므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원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장입하여 사용장소로 운반을 해야합니다.

질문1. 방사선기기로 운반한다면 방사선기기설계승인 및 운반용기설계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나요?

질문2. 운반용기설계승인에 관한 고시를 찾으려는데 못 찾겠습니다. 고시가 몇 호인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 조운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2실)

Cs-137선원을 방사선기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선원용기에 직접 내장하여 운반하신다면 운반용기설계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Cs-137선원을 운반만을 목적으로 하는 B(U)형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신다면 그 용기는 운반용기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첫 번째 경우로 이해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Irradiator에 대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반용기설계승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이며, 이 고시는 http;//kres.kins.re.kr/law_1st.html의 과학기술부고시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사선기기설계승인(조운갑, 042-868-0661) 또는 운반용기설계승인(이복형, 042-868-0659)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 운반용기 사용중 검사에 대한 질의

질의 : 김○○

운반용기에 대하여 사용중 검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반용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중 검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고후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중 검사신고에 따른 필증이 나와야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신고하는 조사기에 대해 사용중 검사신고 양식은 최초 신고한 양식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응답 : 이복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2실)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는 원자력법 제90조의3과 원자력법시행령 제293조의3 제2항 및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9호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사선투과검사용 조사기를 겸하는 운반용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써 사용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사용코자하는 운반용기를 포함한 모든 운반용기가 제작한지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신청양식은 원자력법시행규칙의 별지 제86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사선투과검사용 조사기의 사용은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지 5년이 초과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